

협력업체 선정 운용 실천사항 운영지침

1. 목적

본 운영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 (1) 협력회사란 당사에 소요되는 자재(부품,반제품,완제품)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로서, 협력회사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당사와의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반자적 기업을 말한다.
- (2) "협력회사 선정"이라 함은 솔루션의 ERP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협력회사 운용"이라 함은 솔루션의 협력회사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회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제정 「협력회사 관리규정」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 개시 30일 이전에 전자매체(당사 웹사이트)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해당 협력사에 공지한다.
-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 4) 협력업체 갱신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신규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한다.
- 5)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3) 신규 거래 등록 기준 및 절차

1)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협력회사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 발생 시 발의, 승인,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된 업체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다.

2) 발의 기준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 업체 등록 발의를 할 수 있다.

- ① 내부 공정의 생산 CAPA 부족으로 증설이 불가피할 시
- ② 내부 공정에 없는 신규 공정 필요 시
- ③ 내부 공정의 품질 불안정으로 안정된 품질 확보 필요 시
- ④ 제품개발, 사양관리부서의 검토 결과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 수주 제품이 발생한 경우
- ⑤ 기존 협력업체보다 품질,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 ⑥ 물량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공급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

3)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4) 협력회사 등록 절차

- ① 업체선정/발의 → ② 사전문서 평가 → ③ 제품 승인 → ④ 업체 승인 → ⑤ 승인결과 협력업체 통지
→ ⑥ 업체등록 및 계약체결

단계		내용
1	업체선정 및 발의	발의 기준에 따라 구매, 생산관리, 제조기술, 개발, 품질 등 전부서에서 신규 개발 업체 선정과 발의할 수 있음. 발의 시 업체선정이 되어있는 경우 이를 구매에서 검토하고,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절한 업체를 Sourcing하여 이를 검토한다. 검토결과에 따라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품질부서에 승인을 요청한다.
2	사전문서 평가	업체 등록 요청을 받은 품질부서에서는 등록 평가전 사전 문서를 입수하여 서면으로 사전 문서평가를 실시한다

3	제품승인	<p>가) 승인계획에 따라 제품승인 시 필요한 Sample을 준비하여 평가 대상업체에 연결한다.</p> <p>나) 제품이 완성되면 품질 Check 항목을 결정하여 품질평가를 진행한다.</p> <p>다) 품질 평가 결과 NG 사항이 발생 된 경우 해당업체에 개선대책 수립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승인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p>
4	업체승인	<p>가) 업체 승인 시 업체실사를 진행한다.</p> <p>나) 품질시스템의 구축상태, 당사 제품의 생산 시 품질의 확보 가능성, 이상 발생 시의 조치, 품질보증 체계, 제품의 취급 및 운반 등 품질에 관한 시스템 구축 여부를 체크 Sheet를 이용하여 평가한다.</p> <p>다) 실사에서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한다.</p>
5	승인결과 통지	<p>모든 평가 및 승인절차가 완료된 업체에 협력업체 최종 승인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범위와 승인내용 등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또한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p> <p>※ 승인 여부의 판정: 사전문서평가/품질시스템평가/품질공정프로세스평가(각80점이상)</p>
6	업체등록 및 계약체결	<p>최종 승인된 업체를 AVL(Approved Vendor List)에 업체 등록을 하며 '하도급 기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체결 시, 당사는 협력업체의 재무건전성 파악 및 업체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협력업체는 당사가 인정하는 신용평가기관 에서 발급된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 또는 신용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5)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4. 협력업체 운용 기준

(1) 등록(승인/거래)유지

- ① 업체 승인의 유지를 위해 거래업체에 대한 품질시스템 Audit를 정기적으로 年 1회 실시하여 품질시스템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정기 Audit 진행 시, Audit 개시 30일 전에 전체 업체에 평가 일정을 공유하며 평가실시 15일 전에 평가 대상 협력사에 정기 평가 Sheet를 발송하여 사전에 자가 진단 및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업체 승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체실사결과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7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④ 승인이 유지된 업체에 한해서 매년 1회 '하도급 기본 계약서'를 갱신 체결한다. 단 갱신 계약 체결 시, 당사는 협력업체의 재무건전성 파악 및 업체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접수한다. 따라서 해당 협력업체는 당사가 인정하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된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 또는 신용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등록취소 기준

1)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해산, 영업을 양도 또는 타 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 ①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②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거래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⑤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3)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자매체(당사 웹사이트)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4)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 취소(중단)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 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단,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거래 취소 가능)
 - ④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
- 5)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 (3) 당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